



#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에 기초한 공공 수용 시설 차별 또는 학대 보호 규정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공공 수용 시설물에서(사업장, 식당, 학교, 여름 캠프, 병원, 의사 진료실 및 정부 기관과 같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또는 성별 비순응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인식된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인식된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에 기초한 차별 및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 2 LAD는 공공 수용 시설물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에 기초하여 완전하고 평등한 숙박 제공, 혜택 제공, 시설 이용, 특권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시 말해, 공공 수용 시설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또는 성별 비순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개인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시설 입장, 접대,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사 진료실에서는 잠재적인 환자가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병실을 성별에 따라 배정한다면 반드시 해당 인물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과 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 3 LAD는 또한 공공 수용 시설에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고객, 학생, 후원자, 또는 환자가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에 기초한 학대를 받는 것을 방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당국은 어떤 학생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모욕, 또는 손가락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4 LAD는 개개인이 그들의 성 정체성과 일관되도록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그들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과 일관된 화장실 또는 탈의실 사용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름, 경칭, 또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성별에 대한 특정한 "증명"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공공 수용 시설은 이상의 권리나 LAD에 따라 보장된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하여 그러한 인물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http://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http://NJCivilRights.gov)



DIVISION ON  
**NJ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